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. 5. 22 선고 2024가단102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 2022. 5. 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,3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별지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2. 5. 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공병훈

별지